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928
----------	------

발의연월일 : 2024. 10. 28.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

찬 성 자 : 169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하며, 동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와 동법 제146조에 따라 모욕 발언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로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음.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 한기호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하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미사일로 타격하여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이용하자는 내용의 텔레그

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음. 이러한 국회의원 한기호의 제안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하며 긴급 대책회의 개최 사실까지 알리고, 이어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국회의원 한기호의 메시지에 “그렇게 될 겁니다”라며 국회의원 한기호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남·북 간 대리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군이 선전 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고, ‘과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메시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가 국군 장병과 국민들을 전쟁터에 내모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언동임.

최근 북한은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한 이후 요새화 조치를 취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내 군사적 무력충돌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북한이 국회의원 한기호의 북한군 타격 후 심리전 활용 제안과 이를 수용하는 듯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을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 포고로 판단해 문제로 삼으면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

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또한 국회의원 한기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전쟁의 위험을 내몬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것이지, 우리 한국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북한군 타격 제안 입장에 변화 없음을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는데 가소롭다”고 발언하는 등 국회법(모욕 등 발언의 금지)을 위반하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극심한 안보 불안과도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줌. 이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중진의원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중 북풍몰이’ 험잡이자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망언·망동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국회의원(한기호)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회의원 한기호는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에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송부 하였고 이 사실이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이데일리’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음.

이는 국민의 안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국회의원로서, 또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단순히 방기한 것을 넘어 북한을 자극하여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 속에 내모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언동임.

나. 국회의원 한기호가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군으로 하여 북한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토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제안하고,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연락관 파병을 종용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측과 소통할 연락관을 파견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이는 헌법 제60조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를 위반한 것임.

다. 국회의원 한기호와 대통령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미국과 나토(NATO)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7,000km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폭격, 미사일 타격, 국군 파병 등을 언급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이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한 인사에게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는 ‘북풍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신종 ‘북풍몰이’이자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임.

라. 국회의원 한기호는 2024년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북한을 자극해 대한민국 안보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해당 언동을 지적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오히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예의가 없다”, “조용히 하라”, “무식하다” 등의 망언으로 동료 위원들을 폄하하였음.

국회의원 한기호는 같은 날 신상 발언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참 가소롭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촬영된 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부장관에게 곤혹스럽게 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 심리전에 이용하자, 당연히 이용해야 합니다. 심리전이 무엇이나, 군대도 잦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또 군사 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심리전이라는 말을 하니 까 전쟁하자고 합니다 [...] 심리전을 이해하지 못한 무식의 소치입니다”라고 발언함.

국회의원 한기호의 이 신상발언은 동료의원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무지하다고 모독한 것으로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또한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본인과 정부 인사의 안위만을 챙기는 참담한 인격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할 수 있겠음. 이는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결이라 사료됨.

마. 국회의원 한기호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좌파를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슬픔에 찬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음. 최근에는 2024년 9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후보자임에도 “장관님”이라 호칭하며 “계엄을 검토하라고 시키라. 검토 100번 할 수 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며 계엄 검토를 공개적으로 부탁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기도 하였음.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념갈등을 부추겨 국민분열을 야기시키고, 국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경솔하고 위험천만한 책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겠음.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렸음.

바. 국회의원 한기호의 심리전 제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전쟁 이슈로 덮고자 하는 ‘전쟁 사주’임. 관저 불법 증축, 대통령실·김건희여사 공천개입 의혹, 당정갈등, 의정갈등으로 심화된 보수층의 분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모면하고자 대한민국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반국민적이자 반헌법적 행위로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5조와 제46조, 제60조, 「국회법」 제24조와 제25조, 제146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조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내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현격한 위험을 초래하려고 한 국회의원 한 기호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